

농촌마을종합개발 워크숍

일 시: 2006년 3월 2일(목), 14:00~18:00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산홀

주 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 원: 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 진행 순서 ◆

개회식(14:00~14:10)

- 개회사 최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촌마을종합개발 워크숍(14:10~16:50)

- 좌장 임 승 빈 서울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1 “농촌마을종합개발 공동사업의 법인 경영 방안”
 김 태 용 미래회계법인 대표
- 주제발표 2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평가 지표 개발”
 한 경 수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원
- 주제발표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종합토론 김 경 량 강원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연구센터장
 박 시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박 종 철 목포대학교 교수
 윤 원 근 협성대학교 교수
 이 한 성 밀양대학교 교수
 조 원 량 농림부 농촌진흥과장
 주 경 로 한국농촌공사 농촌종합계획처장
 주 대 관 엑토건축 대표
 최 수 명 전남대학교 교수

휴식(16:40~17:00)

(가칭)농촌마을가꾸기 포럼 창립 총회(17:00~18:00)

- 사회 이 성 근 영남대학교 교수
- 정관 확정 및 임원 선출

목 차

□ 제1주제: 농촌마을종합개발 공동사업의 법인 경영 방안

1. 법인 경영체의 필요성
2. 법인의 사업
3. 법인 경영체의 제 형태
4. 법인의 출자 및 국고보조금 지원
5. 사업별 운영 방안
6. 법인 조직의 구성
7. 참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
8. 기타

□ 제2주제: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평가 지표 개발

1. 사업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 사업 추진 현황
3. 평가 시스템 개발
4. 주요 쟁점사항

□ 제3주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요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전개와 쟁점
3. 사업 환경의 변화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제1주제

농촌마을종합개발 공동사업의
법인 경영 방안

김 태 용
(미래회계법인 대표)

농촌마을종합개발 공동사업의 법인경영방안

1. 법인경영체의 필요성

- 농가부업형태의 수익사업운영으로는 사업자와의 거래가 어려움.
- 농한기 일손 갖기와 같이 마을 이장, 부녀회장명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출증대 시 사업자등록자의 소득세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추가부담으로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움.
- 국고보조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의 필요성.
- 특정개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시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 수익사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원가절감 필요.
- 특정사업부문의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
- 축산, 작물재배와 같은 공동수익사업의 위험회피의 필요성.

2. 법인의 사업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향후 수익성이 있는 사업만을 법인의 사업에 편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가능하게 하여야 함.
- 마을기반정비사업, 경관정비사업, 생산기반시설확충사업 등은 마을 및 개인농가에게 국고지원
- 수익사업이 가능한 축산업, 작물재배업, 농작업 대행, 농촌체험관광, 민박, 식당(떡거리), 가공사업, 판매사업 등을 법인 경영체의 수익사

업으로 운영

3. 법인 경영체의 형태

-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제 16조의 농업회사법인 형태 중 사업의 종류, 주주 간 출자의 금액의 차등 및 세무 문제를 고려하여 선정

가.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 설립근거	농업 농어촌기본법 제15조	농업 농어촌기본법 제16조
2. 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 도모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위탁영농대행
3. 회사의 형태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
4. 사업	1. 농림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림어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의 경영, 농산물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대행용역 및 아래 부대사업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 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5. 조합원의 책임 한계	법인자산처분으로 상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개별조합원의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책임	1. 합명회사—무한책임 2.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3. 유한회사—유한책임 4. 주식회사—유한책임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6. 농지의 취득	취득가능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법 제 2조 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 일 것
7. 설립 자격	농업인, 농산물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산물생산자단체
8. 발기인 수	농업인 5인 이상	합명(무한 2인), 합자(유 무한 각 1인) 유한(유한2-50인), 주식(1인)
9. 출자 제한	조합원의 출자한도 없음(기존의 3분의 1규정은 삭제됨)	비농업인의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음
10. 의결권	1인 1표가 원칙이나 정관에 정할 시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의결권 행사가능	출자지분에 의함

나.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 법인세 면제

구 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 당 연간 1200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66조)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음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5년간(2004년 창업한 경우는 3년간) 법인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6조) 농업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배당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구 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면제	<p>*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p> <p>* 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p> <p>(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p>	<p>*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음</p> <p>주민세포함 15.4% 원천징수</p>

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 농가부업소득비과세

소득세법 제 12조 제 3호에서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 ②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 ③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 ④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농가부업소득규모의 축산범위(별표 1)

가축별	규 모	비 고
젖소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소	30마리	
돼 지	2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 끼	5,000마리	
닭	10,000마리	
오리	10,000마리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005년 3월 1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사업의 범위]의 3항이 개정되면서 농가부업소득 중 민박 등이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라. 사업의 종류에 따른 법인의 형태

- 영농조합법인

공동시설을 이용한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 농작업대행사업, 개별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브랜드를 통한 공동출하사업, 마을단위의 농산물판매장운영사업, 개별농가단위의 민박사업의 중개, 예약관리 및 홍보, 농가단위의 농촌체험사업, 농가부업사업을 통한 생산제품의 판매사업 등 주주의 출자금액이 동일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마을단위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

- 농업회사법인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경영인의 영입이 필요한 가공사업, 식당업, 폐교 등의 마을공동단위의 민박사업으로 참여자가 마을 주민의 일부가 참여하며, 주주간의 출자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운영법인의 형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농산물가공사업(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한과 등의 전통식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마을단위의 공동민박사업**, 식당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이 적용되어 경쟁업체의 고소 및 고발 등의 가능성이 높음

- 개별 민박사업의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나 적극적인 세원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상태이며 소득세의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12백만원
비과세적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중 농가민박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농
업회사법인이 적절: 조합원의 책임문제

- 법인세 효과

농업회사법인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사업년도부터 3년간
(총 4년간) 법인세가 50%감면 되며 이후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하
여 일반법인과 달리 추가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음.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 당 연간 1200만 원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마을 주민전체가 조합원으로 참
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게 됨.

바. 법인형태에 대한 결론

- 현행 세법 체계하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운영법인형태로 적절함.
사업의 위험도가 높은 축산업, 가공사업, 주주의 출자금액이 차이가
크고 참여자가 마을 전체일원이 아닌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사
업의 형태로 적절하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
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적고 이익금 배당 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어려움 점이 있어 현행의 제도화에서
는 농촌마을 종합개발공동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형태가 적절하
다고 판단됨.

사. 법률보완

- 조합원의 책임제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책임을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으
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조합원의 책임한계를 규
정이 필요.

-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및 감면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작물재배소득)에 대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축산업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주주1인 당 연간 12백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초과 배당금액에 대하여 5%의 저율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 법 제 68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법인의 출자 및 국고보조금 지원

○ 출자

법인의 시설만을 국고보조지원하는 경우,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법인 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법인의 향후 운영자금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자본출자가 필요함.

○ 국고보조

수익사업과 관련한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국고보조는 법인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일정금액의 운영자금도 국고보조로 지원

- 토지, 건물을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재할 시 추가자금차입을 위한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의 차입이 어려움

○ 국고보조시설의 원활 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출자하는 형태(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 및 농업회사법인의 주주로 참여)도 고려 해 볼 수 있음.

5. 사업별 운영방안

가. 관광사업

- 농촌체험관광(민박포함): 농촌체험관광에 필요한 공동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인 토지, 건물 및 집기비품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

고 그 소유권은 법인이 가진다.

- 민박시설과 같이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은 농가에 직접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받은 농가는 설립되는 법인이 정한 민박등급별 가격, 시설기준을 따르고 고객의 예약, 배정, 대금수령은 법인에서 수행한다. 법인은 민박대금의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함으로써 법인운영에 필요한 수익 확보가 가능하고,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민박시설(폐교 등을 이용),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한다.
- 고시촌, 건강체험관광(비만, 당뇨 등의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 기타의 관광사업의 경우, 개별농가단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약 및 관리서비스를 법인이 담당하고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동시설의 통한 사업일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운영.

나. 먹거리사업(식당)

- 농촌체험관광, 민박 등과 연계된 먹거리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부녀회에게 법인이 임대하고 법인에서 정한 서비스기준 및 운영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
- 민박운영 시 음식물제공은 민박에서 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음식물판매에 따른 식품위생법문제 해결.
- 향후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고 항시 운영이 필요한 경우(관광지 주변 도로 등에 위치)는 법인이 전문경영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운영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및 자체운영하고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을 고려

다. 공동출하 및 농산물판매장

- 공동출하 및 농산물판매장은 법인이 직접운영
- 출하자와 공동출하약정 및 공동출하수수료 확정
- 농산물판매장은 출하자와 위탁판매계약서, 재고손실에 대한 책임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본계약서를 작성

라. 축산업, 작물재배

- 법인의 토지가 아닌 개인농가의 토지에 축산업 및 작물재배시설은 개인사유화문제와 해당 토지의 경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법인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개인토지를 이용한 생산시설을 수익사업으로 편입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토지를 법인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만 수익사업으로 편입하여 법인이 운영. 다만, 축산업의 경우 사양관리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함으로 기존 축산농가 위주의 사업부제도로 운영.

6. 법인조직의 구성

가. 총회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에서 사업예산승인, 재무제표승인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

나. 이사회

-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고 경영에 권한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화

- 이사회구성: 이사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사로 참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연체 등의 문제가 없고 법인의 추가차입 등을 위하여 보증이 가능한 사람으로 선출
- 해당 이사는 각 사업부의 팀장을 겸임
-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고 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급여 지급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이사직은 봉사직이 아니다.
- 이사회 의결사항 및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하여야 함.
- 대표이사나 각 사업부의 임원을 선출직으로 하는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임원선출의 가능성이 높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따라서 임원은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보완하여야 하며, 선임된 임원에 대한 승인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지는 방법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정관에 규정)

다. 감 사

-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수행하며 감사의 수는 2명 이내로 함

라. 자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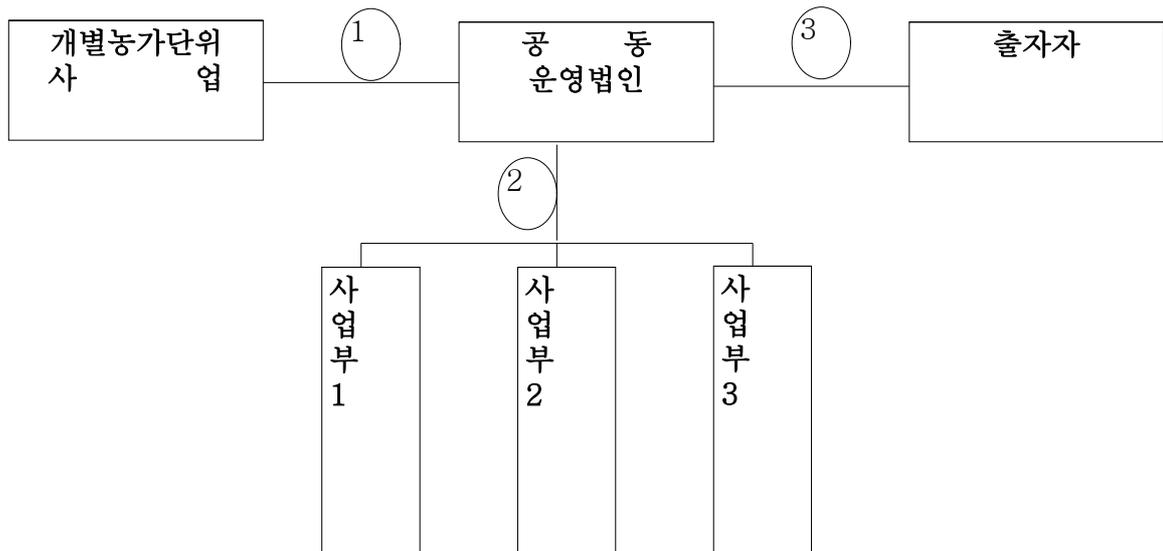
- 마을의 청년회, 부녀회 등의 회장, 마을이장, 해당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해당사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간의 이해조정과 사업의 타당성 및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 법인의 운영을 조언하는 역할 수행

다. 사업부

- 사업부별로 담당 이사를 두고 담당이사가 해당 사업부를 총괄

7. 참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성과측정시스템 구축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참여시간 및 공헌도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의 지급규정의 명문화
- 사업부별로 명확한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시스템구축
- 각 사업부별 이익에 대하여 각 사업부 참여자에게 우선 배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의 정확한 손익산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부의 직접손익 뿐만 아니라 운영법인의 공통비를 각 사업부별로 배부하는 배부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이익배분의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 ① 개별농가단위의 사업의 경우, 총수익 중 개별농가의 비율과 공동 운영법인간의 배부기준의 확정: 민박 수입금액의 95%는 농가에 귀속되며 5%는 법인에 귀속 등
- ② 사업부의 이익에 대하여 사업부 참여자와 공동운영법인간의 소득의 안분 기준: 1차적으로 각 사업부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사업부의 참여자에게 우선배당권을 가지도록 한다.
- ③ 공동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기준 확정: 이익금액 중 일정비율은 향후 운영자금조달과 신규사업을 위하여 사내유보하고 이익금 중 출자배당의 비율의 상한선을 확정

8. 기타

가. 법인의 주주의 요건 및 출자금액

-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 외에 출향인, 비농업인도 준조합원 및 농업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새롭게 가입하는 주주의 출자금액은 기존 출자자와 차등화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나. 탈퇴시 지분

- 사망, 주소지 이전, 농업인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탈퇴하거나 준조합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탈퇴시 지분상환은 출자금 및 출자배당금 중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자본으로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문화 하여야 함. 또한 법인이 적자로 인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금에서 결손금의 해당 출자자의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마련.
- 일부 영농조합법인에서 탈퇴시 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인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어떠한 경우도 배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

제2주제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평가 지표 개발

한 경 수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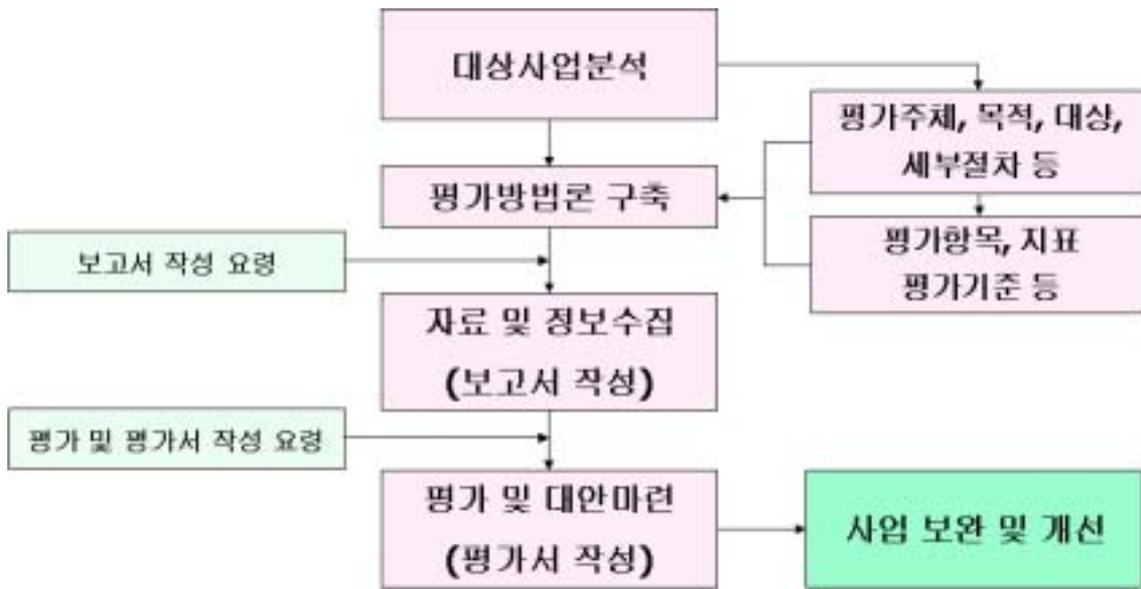
농촌마을종합계획 평가 지표 개발

1. 사업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계획 수립,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예산과 연계하려는 움직임 가시화.
- 따라서, 사업의 모든 과정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사업을 점검·개선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
- 사업 평가의 목적
 - 계획이 수립된 사업이나 수행 중 또는 완료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분석
 - 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원, 사업수행 과정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사업 목표 달성
⇒ 사업의 추가 시행 또는 개선 여부 결정에 도움
- 일반적 평가 시스템 구축 절차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 사업의 목적
 - 농촌 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 주요 사업내용

- 마을 경관 개선,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도시민 등의 농촌정주 지원을 위한 마을기반 정비, S/W 관련 사업 등

○ 주요 추진 현황(36개 권역)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04년도: 69권역 → 36개 권역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사업 시행 : 1단계 사업 착수(36개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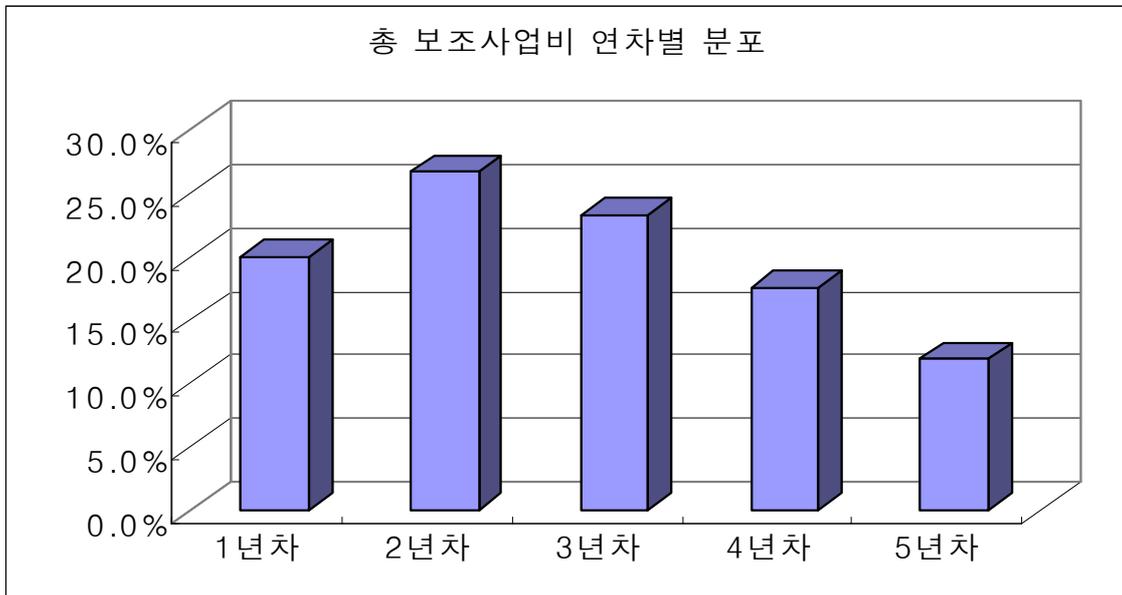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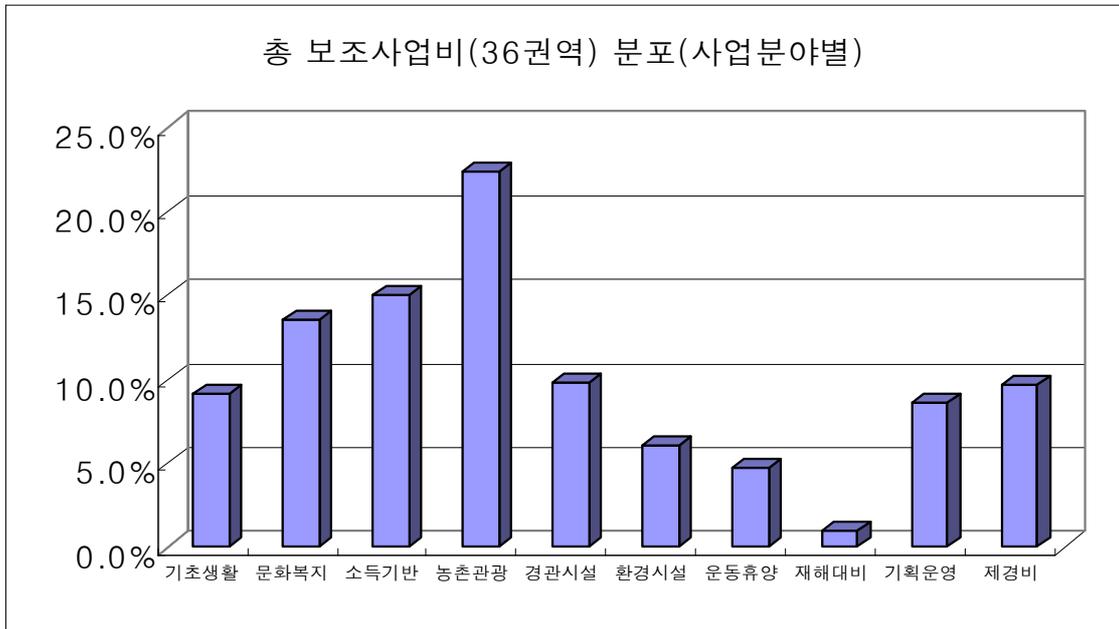
<하드웨어 분야>

- 2005년도 조기 착공을 위해 착공 가능한 공종 우선 설계 후 공사 착수
- 36개 권역에 총 117개 공종을 공사 착수(공정률: 평균 27%)
- 16개 권역 세부 설계 완료. 20개 권역 설계 중(2월 10일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

- 주민역량 강화 등 S/W 분야 시행 계획은 8개 권역 완료

○ 사업비 현황(36개 권역)



○ 사업비 및 공종 현황(36개 권역)

구분	총공종	1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비율 (%)	1,2년차 비율 (%)
평균	19.9	13.6	3.3	4.8	5.5	22.8	57.8
최대	35	29	9	13	19	66.7	88.9
최소	0	3	0	0	1	0	0

- 사업 중간평가 관점에서의 개선 사항
 - 단계별, 연차별 추진전략 및 목표 설정
 - 1단계 사업 중 2년차까지의 투자 사업비 및 세부 완료 공종수 비율 상향 조정

3. 평가시스템 개발

- 평가 주체 : 농림부(평가위원회)
- 평가 목적
 -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평가업무 정례화 및 지속적 추진
⇒ 법제화 검토
 - 사업추진과정과 결과 평가 ⇒ 예산 반영
 - 평가 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 조정, 컨설팅 등
 - 평가 방식: 절대평가 or 상대평가

○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 평가 대상
 - 사업내용(사업 메뉴)
 - 1안) 시행계획 추진일정 상 평가 시점 전년도 완료 공종
 - 2안) 평가 시점까지 완료 공종 + 추진중 공종

- 평가 시기 : 단계별 사업의 연속성과 예산 확보
 ⇒ 3차년도 1/4분기 내 실시

사업시행 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1단계			2단계		
◦ 기본계획 확정 ◦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승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평가			

○ 평가 지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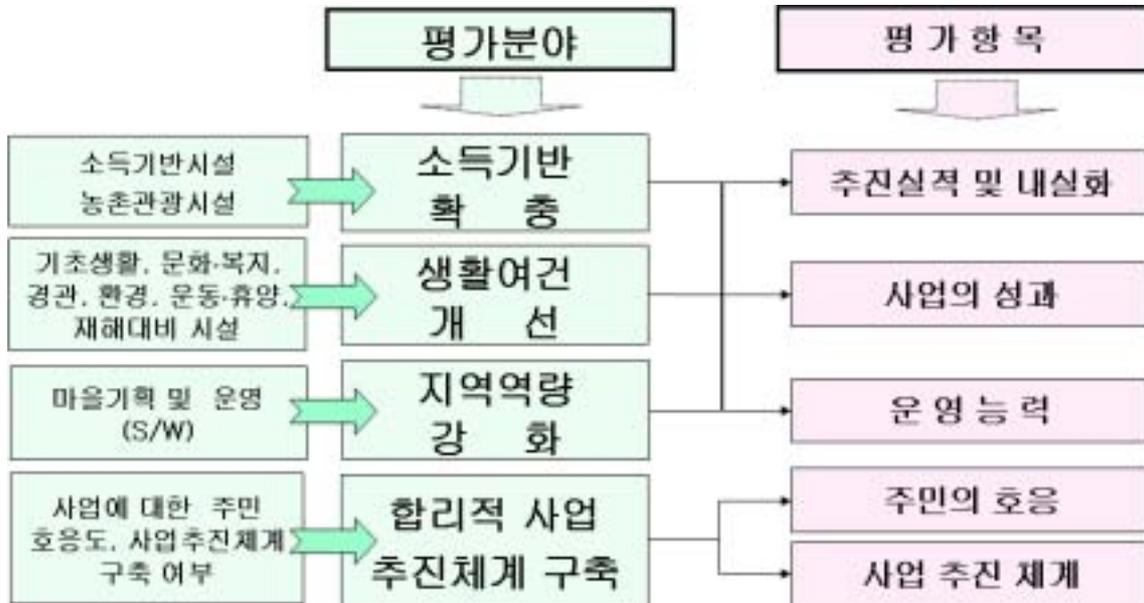
- 평가 분야: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 부문

- 평가 항목
 - 사업 추진과정을 고려하여 ‘계획’, ‘집행’, ‘성과’를 기본
 - ‘운영능력’, ‘주민호응’, ‘사업추진체계’ 등 선택적으로 활용

- 평가 지표: 대표성, 용이성, 유용성, 신뢰성 등을 기준

- 평가 기준: 지표별 평가 기준(평가척도)은 정성적·정량적 수준에 합리적인 기준 제시하여 표준화된 수치적 표현의 기저를 제공하는 과정

○ 평가 분야 및 항목



○ 평가 지표

평가 분야	평가 항목	평가지표(22개)	평가 기준
소득기반 확충 (22)	추진실적 및 내실화	* 계획대비 추진실적(공정) * 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작성 중
	사업의 성과	* 주민의 만족도 * 타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 지역파급효과의 가능성	
	운영능력	* 운영계획 수립 여부 * 자발적 운영기금조성 여부 * 수익성 제고를 위한 마케팅전략 수립 여부	
생활여건 개선 (11)	추진실적 및 내실화	* 계획대비 추진실적(공정) * 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사업의 성과	* 주민의 만족도 * 타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운영능력	* 운영계획 수립 여부	
지역역량 강화 (39)	추진실적 및 내실화	* 계획대비 추진실적(공정) * 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사업의 성과	* 주민의 만족도	
	운영능력	* 운영계획 수립 여부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 구축 (28)	주민의 호응	* 주민의 참여도	
	사업추진체계	* 관련기 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 문제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 자발적 모니터링체계 구축 여부 * 원활한 자금관리체계 구축 여부	

○ 평가 방법

- 평가 매뉴얼 작성(농림부 → 지방자치단체, 추진협의회 등)
 - 평가 개요: 목적, 근거,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 등
 -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목적, 방법 및 절차, 서식 및 작성 요령 등
 - 평가위원회 운영 지침: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평가내용 및 방법, 서식 및 작성요령 등

-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 단순명료, 객관적, 구체적 평가지표, 수치 등 활용
 - 정성적 평가: 정량적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손쉽게 접근가능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에 대한 기초 자료 및 관련 정보 확보

○ 기관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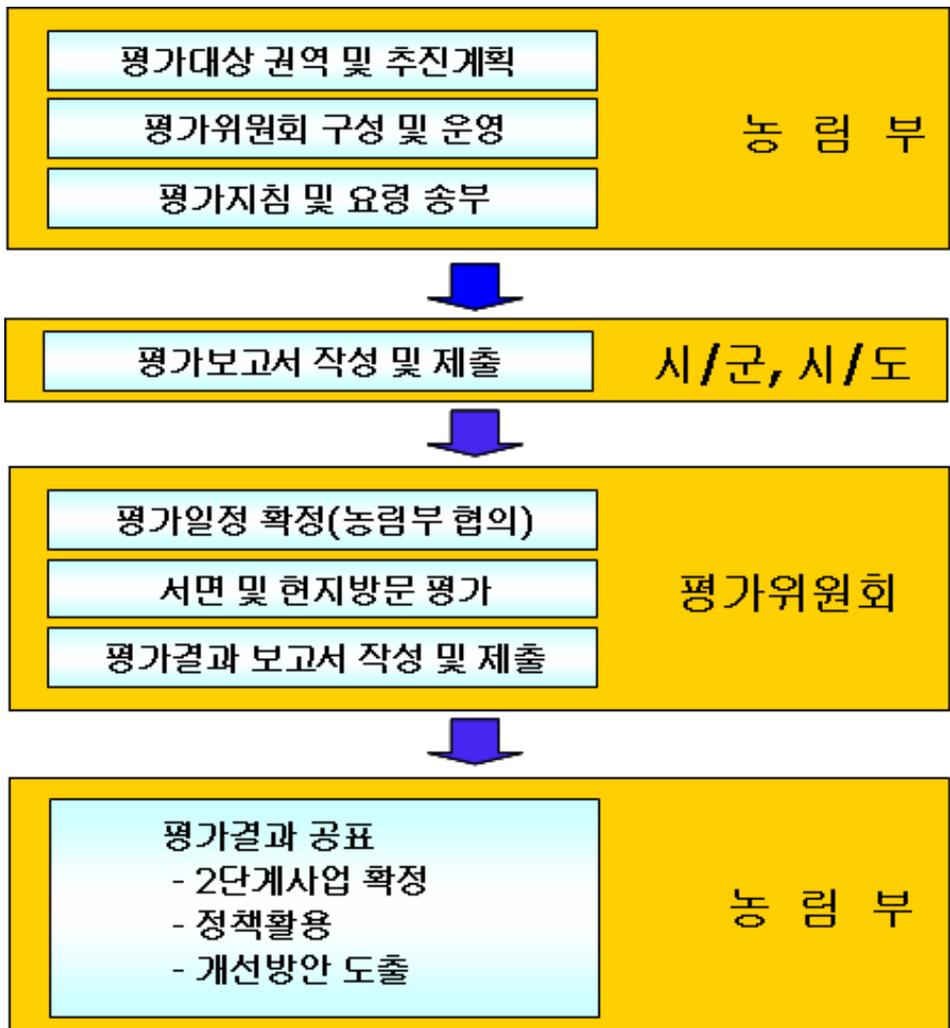
- 농림부(평가위원회)
 - 피평가자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 및 자료준비 기간 배려
 - 자료목록 및 평가방법(평가매뉴얼) 제시

- 지방자치단체
 - 평가매뉴얼에 의거하여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 사업진행 상의 문제점 등을 공중이나 분야별로 보고서에 기록하여 평가자에게 제공

○ 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향 제시
- 4개 분과팀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추진체계 팀장 겸임
- 팀별 간사 1인, 위원 7-8명
- 평가 방법, 항목간 배점 등 협의 조정
- 평가보고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안 및 대안 등을 포함

○ 평가 절차



○ 평가 결과의 활용

- 2단계 사업 시행시 차등 인센티브 부여
- 타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사업정체성 확충을 위한 사업성과 발굴
-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책 마련
- 신규 사업 및 정책 발굴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

4. 주요 쟁점 사항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모든 단계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 법제화
- 평가 목적 및 결과의 활용
 - 평가 방식: 절대평가 or 상대평가
- 평가 시기를 고려한 평가대상 사업 범위
- 평가 방법
 - 자체 평가보고서(지방자치단체) → 농림부(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 추진 관련 자료(지방자치단체) → 농림부(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보고서 내용
 - 단순 평가(점수화) 수준
 - 문제사항에 대한 개선책 및 대안 제시 등 컨설팅 보고서 수준

제3주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송미령(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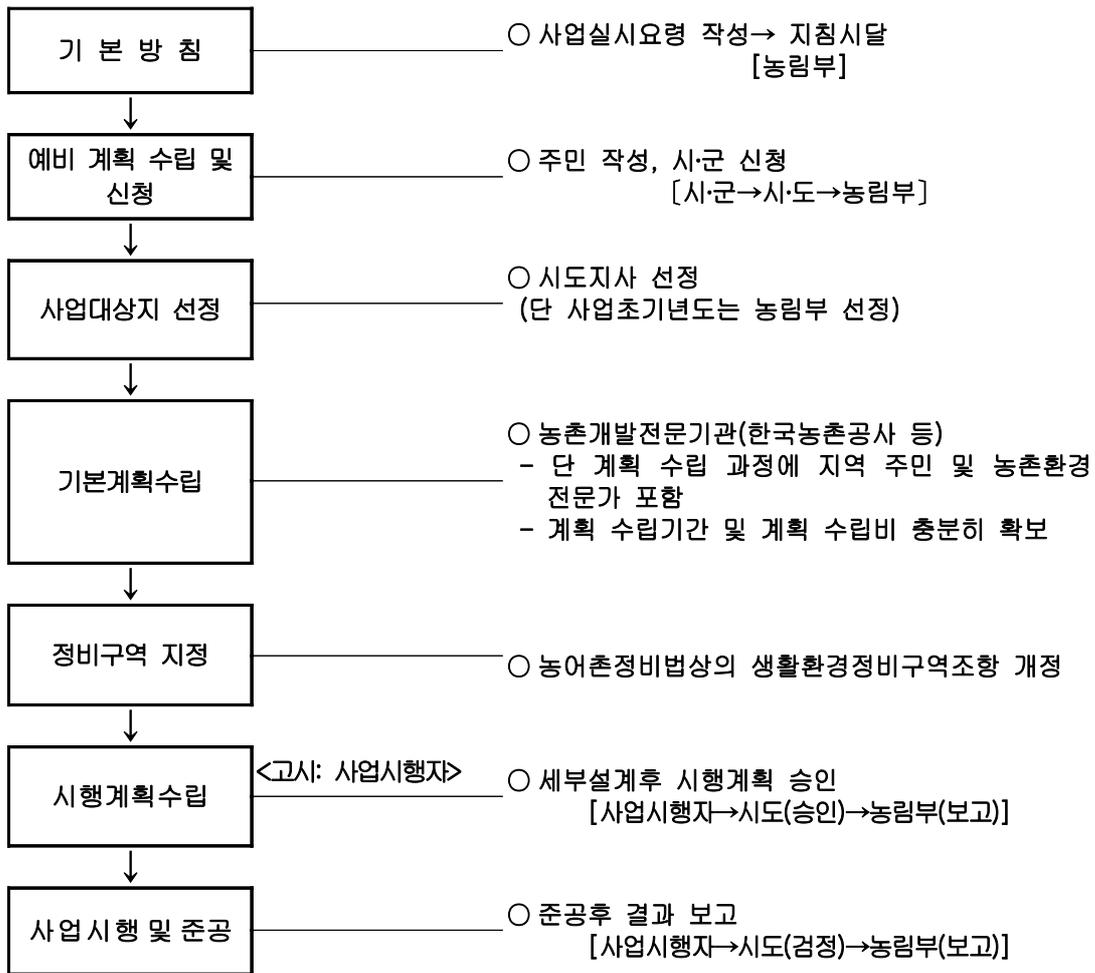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 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소득확충 시설, 경관관리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촌지역 3~5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 권역별 특성화 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의 개발을 도모
- 기존 농촌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사업의 필요성으로 인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의 선행 개발 사업만으로는 농촌의 정주기반 확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액 분산투자로 인해 효과도 미약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만한 수단도 부족
 -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소득기반 창출을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촌개발사업의 방식 전환 필요 등
- 따라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①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 개발 ② 지역자원 관리 및 소득기반 창출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 개발 ③ 주민 등이 전 단계에 걸쳐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참여적 개발 수단 등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

- 발전 가능성이 있는 1,000개 권역을 대상으로 향후 2013년까지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
- 2005년 예산 기준 645억원(보조 489억원, 용자 156억원)
 - 보조사업비: 권역당 70억원 이내(국고 80%, 지방비 20%)
 - 용자사업비: 농촌주택정비 780호(호당 20백만원)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전개와 쟁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3년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4년에 사업화되어 현재 76개 권역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상태이다.
 - 2004년 대상인 36개 권역의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05. 6월말)
 - 16개 권역은 2005년 10월 말, 20개 권역은 2005년 말 공사 착수
 - 2005년 신규 40개 권역은 우선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
 - 20개 권역은 2006년 착수
- 사업 추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전의 농촌개발사업에 비하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초기 대상 권역의 사업 완료 시점이 빨라도 2007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와 쟁점도 많다.

- 권역 범위: '농촌공간정비 수단으로서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작다', '3~5개 법정리는 현실적인 사업지구로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등

- 대상 권역 선정: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선정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 사업 추진 체계
 -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못 이루어지고 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관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못해 혼란이 있다.
 - 계획수립 절차가 복잡하여 일관되게 초기 기본구상을 따라 추진하기가 어렵다. 기본계획, 실행계획, 실시설계 등의 여러 계획 단계마다 참여자들이 모두 달라 MA(Master Architect)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 소득사업에 따른 갈등 유발 소지
 - 투자-집행-이익배분 단계별로 무임승차자가 생기기도 하고 마을 주민 중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도 한다.
 -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을개발사업의 본래적 의미를 고려하면 공동체로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기도 한다.

- 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성과 확산
 - 사업의 완료 단계는 아니라도 일정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대상 권역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그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타 사업 권역에 파급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계획 수립에 장기간을 소요하고 있다.

- 사업량 목표 수정
 - 2013년까지 1,000개 권역을 지원한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고, 새로운 중심마을 정비 수요 등이 있으므로 사업 내용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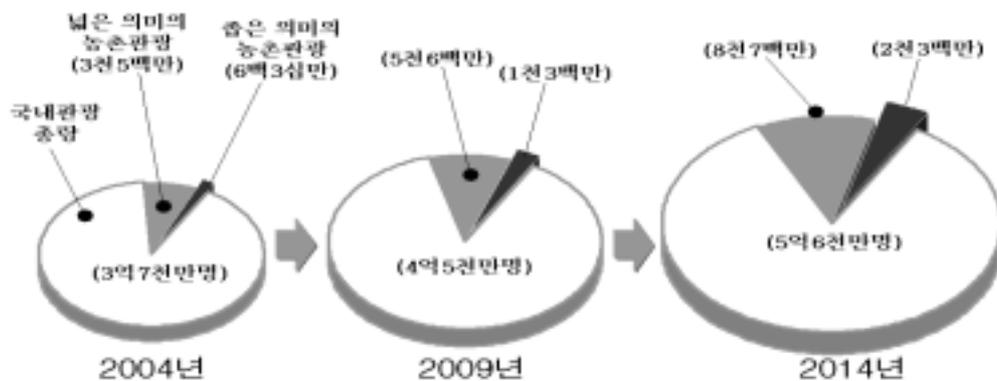
3. 사업 환경의 변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민의 농촌 체재 및 정주 수요에 대해 구체적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3.1. 시장 환경: 도시민의 농촌 체재 및 정주 수요

-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는 체재형 수요와 정주형 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체재형 수요란 소위 '5도2촌' 형태로, 사는 곳은 도시이지만 주 1~2일 정도는 농촌에 머무는 거주 형태이다. 정주형 수요는 소위 '5촌2도' 형태로, 사는 곳이 농촌이고 주 1~2일 정도 도시에 머무는 거주 형태이다.
- 도시민의 농촌 체재형 수요의 증대는 농촌관광 수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관광부문에서 좁은 의미의 마을단위 농촌관광 수요 비중은 1.7%에서 4.2%(2014년)로,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 수요 비중은 9.4%에서 15.7%(2014년)로 그 몫이 점차 커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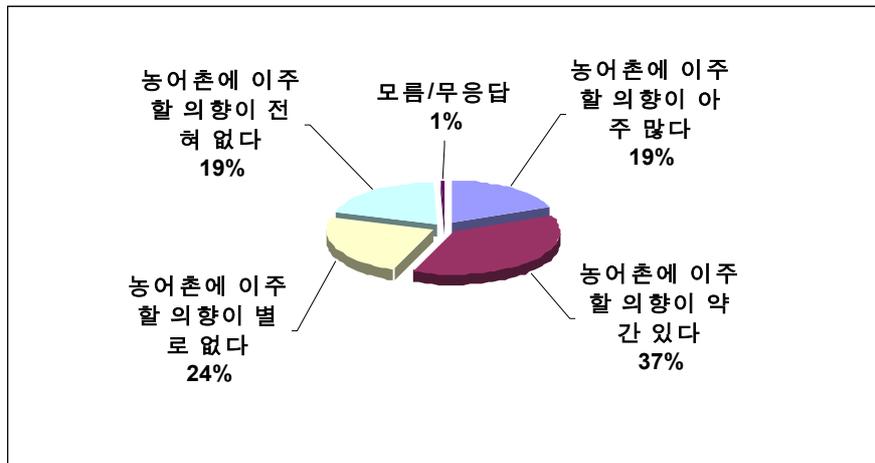
그림 7. 농촌관광 수요 변화 전망



- 도시민의 농촌 정주형 수요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전국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농촌 정주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1) 도시민의 높은 농촌 이주 수요

- 향후 농촌 이주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이 전체의 56.1%로, 우리나라 도시민 2명 중 1명은 농촌 이주 의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의향은 대체로 전 연령층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50대(65.0%), 여자(50.1%)보다는 남자(62.1%)가, 고졸 학력(61.5%), 자영업자(66.5%), 가구주(62.9%) 등에서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한편 소득계층에 따른 농촌 이주 의향 차이는 크지 않다. 가령,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 중 농촌 이주 의향이 약간이라도 있는 이들이 55.4%이고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계층 중 농촌 이주 의향이 약간이라도 있는 이들이 51.9%로 나타나고 있다.

2)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연고 및 체험

- 도시민의 58.9%는 농촌 거주경험을 가지고 있고, 75.0%는 농촌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의 경험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일수록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이 높다. 특히 농촌 체

험관광 등을 위한 농촌 방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이주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미 농촌 이주를 준비 중인 도시민도 상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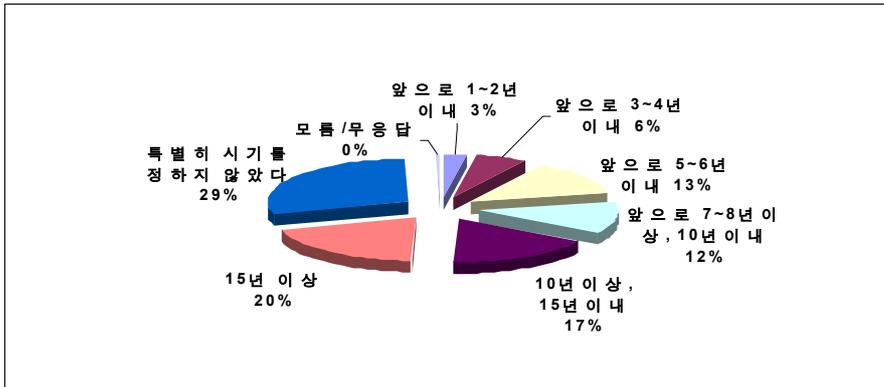
- 매우 적극적으로 농촌 이주를 준비 중인 도시민은 전체의 4.7%,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은 18.6%에 달하고 있다. 연령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농촌 이주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미 농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도시민 응답자들의 준비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이나 토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38.3%)', '이주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28.1%)', '직장,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14.4%)' 등의 순이었다.
- 농촌 생활에 대한 정보의 유통 경로는 농촌에 살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등을 통해 듣는 개인적 경로(41.9%)가 지배적이며, 대중매체(21.5%), 인터넷(13.4%) 등이 다음을 잇고 있었다.
- 농촌 이주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는 농촌 생활환경(27.6%) 및 농촌 주택·토지(22.3%) 관련 정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4) 가까운 장래에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많은 편

- 5~6년 이내에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전체의 21%에 달하고, 10년 이내에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도 33%에 달하고 있다.
- 농촌에 아무런 유입 인구가 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인구 감소가 이어진다면 2005년 현재 전국 대비 농촌 거주인구의 비중이 18.5%에서 2015년 14.8%로 감소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말한 수의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 농촌 인구는 22.7%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 즉,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잠재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5) 선호하는 이주 희망지역은 현 거주지 인근의 자연경관이 좋은 곳

- 이주 시 선호하는 지역의 유형으로는, 향후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들 중 52.6%가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산업활동이나 사업여건이 좋은 지역(14.8%)', '숲이 있는 지역(12.6%)', '농사여건이 좋은 지역(8.9%)' 등의 순이었다.
- 이들 중 12.4%가 경기도를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 경북(11.7%), 경남(10.7%), 강원(10.5%) 등의 순이며, 주로 현 거주지 인근 지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도시와 가까워 생활환경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33.2%)이면서, 기존의 농촌 마을(43.7%)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다.
- 농촌 이주 의향을 가진 이들의 63.9%는 개인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살기를 희망하고, 22.3%는 기존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희망하고 있다.

6)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주로 풍부한 여가생활 향유

○ 도시민의 30.6%는 은퇴 후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농촌이 가진 전원적 생활의 풍요로움을 향유하기 위해서(27.9%), 또는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22.7%)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0대 연령층의 이주 희망 이유가 은퇴 후 여가생활 때문이라면, 20·30대 젊은 연령층의 이주 희망 이유는 농촌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농촌으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농촌생활이 상대적으로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3.4%). 그러나 이들은 이주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제거된다면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7) 농촌 이주 후에도 경제활동 지속 의사

○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29.7%이지만, 농림어업 및 자영업 종사 희망자가 각각 20.7%와 21.7%, 전문직 종사 14.7%, 직장 출퇴근이 10.5%에 달하였다.

- 연령이 낮은 계층은 주로 전문직이나 자영업 종사를 희망하고, 연령이 높은 계층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농림어업 종사를 희망하고 있다.

- 농림어업 종사 희망자의 대부분은 밭농사를 희망(44.8%)하며, 자영업의 경우는 숙박 및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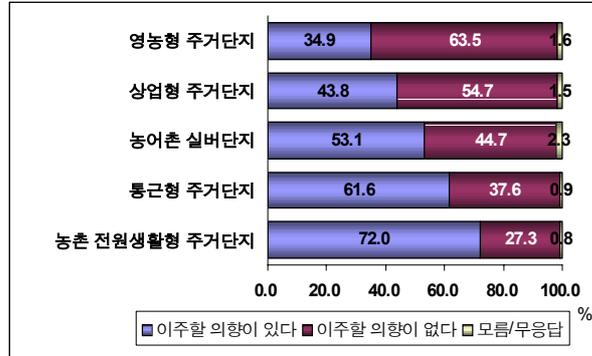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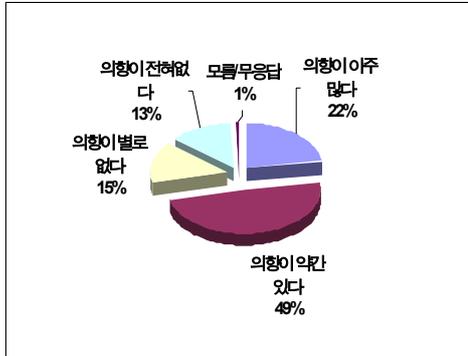
8)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요

○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41.9%),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17.8%) 창출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 그러나 매우 적극적으로 혹은 약간이라도 이미 농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더 중요한 정책 수요는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도시민의 체재형 주말농원, 전원생활형 주거단지 등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체재형 주말농원 이용 수요는 70.9%, 전원생활형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는 72.0%로 대부분의 도시민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3.2. 정책환경: 복합생활공간 및 은퇴자마을 조성방안 구체화

○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 정주공간 조성

- 마을단위 주거공간 조성 확대 및 추진방식 다양화: 2013년까지 도시민 7만 명의 농촌 주거공간을 정책적으로 지원

이주 도시민 주거지원을 포함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 우대

- 마을 주변 숲 활용 및 경관 개선: 숲가꾸기사업, 산림휴양·휴식 기능 확충, '국민의 숲' 조성 확대, 국공유림의 사용허가범위 및 대부 확대, 경관보전직불제 범위 확대, 경관지표 마련, 경관계획 수립 지원 등

- 소도읍과 중심면의 서비스 기능 강화: 소도읍육성사업 보완, 군당 2~3개소 면소재지 적극 육성

200개소 범위 내에서 중심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존시설 현대화, 시가지 정비 등의 사업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

- 거점도시의 농촌 지원기능 강화

- 도시민 농촌 이주단계별 지원체계 정비

- 준비단계: 인터넷을 통한 농어촌종합정보망 본격 가동, 현지안 내·상담체계 및 전원생활교육 확대

- 실행단계: 주택개량융자금 지원대상을 이주도시민까지 확대 및 융자조건 개선, 영농정착자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건 개선, 농어촌 일자리 및 사회봉사활동 안내 기능 강화

- 정착단계: 농촌의 마을리더 양성, 1인1촌 전문가컨설팅사업 확대, 출향인사 등의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콘테스트', 이주도시민과 함께 하는 마을·지역발전계획 지원, 체재형 주말농원 다양화 및 활성화, 이주도시민의 지역이해 교육 시스템 구축, 이주도시민 후견인제도 운영 등

- 추진체계 정비
 - 복합생활공간조성 협약제도 도입
 -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지원책
 - 농촌 통계 확충 및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도입 검토

○ 은퇴자마을 조성방안

- 복합생활공간의 4가지 모델 중 하나인 은퇴생활형을 보완하고, 지자체 참여 및 사회적 분 조성을 위해 콘테스트 방식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은퇴자마을을 조성함.
 - 복합생활공간 4가지 모델: 은퇴생활형, 자영업형, 전문직형, 농림어업(취미영농)형
-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커뮤니티운영, 복지·문화서비스 등 참여 프로그램을 보완
 - 은퇴자마을 조성방안 설명회
 - 지자체가 developer 등의 협력을 얻어 계획 수립
 - 콘테스트 개최 및 우수 시·군 선정
 -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제공: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정 시 우선 배려, 정부의 별도 포상, 관계부처 지원사업 연계 협의 등
 - 사업 실행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 농촌 체재 및 정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를 농촌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농촌의 활력 증진, 도시문제의 해결,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창출 등을 위해 기획된 수단이지만, 부분적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정책효과의 파급 범위를 국민 전체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의 융화 문제가 뒤따르고 사람들의 주거 이전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다.
- 우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 지침을 변경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세부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사업 지침 내에 도시민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추진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그밖에도 관련되는 소프트한 사업들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서는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마을종합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여 타 부처의 관련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서둘러 협약제도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농촌 활성화에 도움을 얻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방 공무원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
- 또한, 도, 시·군, 농촌 주민 등이 복합생활공간이나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해당 지역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계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면소재지 마을의 “중심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군당 2~3개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군 단위 지역의 중심지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 권역 내에 적합한 토지를 활용하여 도시민의 체재와 정주를 유도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서 예시하는 소프트한 사업들을 스스로 기획할 수도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단(혹은 법인)이 중심이 되어 해당 권역에 필요한 이주 의향자들을 심사, 모집할 수도 있다.
 - 농촌주민의 역량 보완하고 역할 분담 가능
 - 도시민에게는 일자리 제공 효과도 기대
- 향후 다양한 벤치마킹할만한 사례가 보급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stake holders)의 범위를 보다 확장할 필요도 있다.

- 참고 사례

경북 상주시 이안면 늑동마을

- 2006년 10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 기존 마을 내에 도시민 주거공간을 복합거주형으로 조성하고, 기존 가구도 재개발(총 30호). 이주가구 14호의 주택을 신축하고 기존가구 16호중 12호가 주택 신개축 추진
- 면도 및 리도 확포장사업(행자부), 교량교체사업(행자부) 등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연계 추진
- 2007년 3월 마을재개발 및 주택건축 예정

제주도 사례: 주민들이 마을 내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마을에 필요한 입주자를 모집

프랑스 사례: 주민들이 'SOS빌리지'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마을에 필요한 도시민들을 모집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사례: 텃밭이 딸린 10평 전후의 주택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도시민에게 임대

<참고문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제70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 박시현·박주영, 200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 2006,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와 농촌의 미래상”, 「2006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박주영, 2004,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한성, 200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